

요 약

-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에서는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일정액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한다는 것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됨
 -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는 만기 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에서 일정 금액을 향후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따로 공제해두고 나머지 금액이 생존연금(연금월액)으로 지급됨
 - 이처럼 연금월액 계산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이 공제된다는 내용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약관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산출방법서상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내용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었는지(쟁점 ①), 해당 내용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쟁점 ②)가 쟁점이 됨
- 쟁점 ①: 기존 판결들에서는 산출방법서가 보험약관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최근 판결에서는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음
 - 약관에서 '연금월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라는 직접적인 지시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연금월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금계약적립액에 대해서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지시문구를 두고 있는 점, 가입설계서에서 연금월액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해당 보험약관의 일부이거나 적어도 해당 보험약관은 당연히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쟁점 ②: 기존 판결들에서는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된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최근 판결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 자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보험계약자가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형을 비교하여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본 것임

1) 최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심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1. 즉시연금보험의 상품 구조 및 쟁점

○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즉시(통상적으로 납입 익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의 보험상품임

- 연금만을 지급받는지, 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는지, 연금을 언제까지 지급받는지, 나중에 지급받는 목돈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1〉 즉시연금보험의 상품 유형

A유형 (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는 유형)	A-1유형[상속연금형(종신형)]	만기 또는 사망 시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연금계약적립금을 지급받는 유형
	A-2유형[상속연금형(만기형)]	만기 시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받는 유형
B유형 (연금만 지급받을 뿐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지 않는 유형)	B-1유형[순수종신연금형]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
	B-2유형[확정기간연금형]	만기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

- B유형은 적립금뿐만 아니라 순보험료까지 나누어 연금으로 지급하므로 A유형보다 연금의 액수가 큼
- A유형 중에서도 A-1유형은 적립금액이 바로 연금액이 되지만 A-2유형은 적립금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이 연금액이 되어, A-1유형은 매월 연금은 많이 받지만 나중에 목돈은 적게 받고 A-2유형은 매월 연금은 적게 받지만 나중에 목돈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임
- 이번에 즉시연금보험 소송에서 문제가 된 유형은 A-2유형, 즉 상속연금형(만기형)임²⁾

○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됨

- 원래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의 금액(연금월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음

〈표 2〉 생존연금의 계산

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계약에서의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연금계약순보험료”라고 함
② 연금계약순보험료에 일정한 이율(Max[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을 곱한 금액이 “이자상당액”으로, 이것이 매월 생존연금 지급을 위한 기본 재원이 됨 ³⁾
③ 위 이자상당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나중에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따로 공제해 두고,
④ 잔여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함

2) 이하 상속연금형(만기형)은 ‘상속만기형’, 상속연금형(종신형)은 ‘상속종신형’으로 표현함

3) 실제로는 이자상당액은 생존연금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되는 것임

- 위 단계 중 ③단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만기 시에 연금계약순보험료보다 더 큰 금액인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 차액을 충당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해두는 것임
 - 만기에 연금계약순보험료가 아닌 기납입보험료 전액(즉, 차감했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상당액까지 포함된 원금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계약순보험료에서 시작한 적립금에 매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더해서 만기 시 적립금의 수준이 기납입보험료와 같아지도록 하기 위함임
- 그런데 위와 같이 이자상당액 중에서 매월 일정액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하여 계산된다는 것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에는 나와 있지만 보험약관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⁴⁾ 이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것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만약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보험 원리나 수리적으로 보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보험회사 측의 처리내용이 합당하고 또한 산출방법서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약관상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임

○ 이하에서는 즉시연금보험에 관한 소송의 현황 및 최근 선고된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함



2.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 현황

○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하여 제기된 1심 소송들에서 대부분 보험회사가 패소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험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음

〈표 3〉 즉시연금 보험회사별 소송 경과

날짜	보험회사	1심 결과
2020년 9월	NH농협생명	승소
2020년 11월	미래에셋생명	패소 → 항소
2021년 1월	동양생명	패소 → 항소
2021년 6월	교보생명	패소 → 항소
2021년 7월	삼성생명	패소 → 항소
2021년 10월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자료: 한국경제(2021. 10. 18), “즉시연금 소송 매년 지다가 이번엔 보험사가 이긴 이유”

4)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는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 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한다고 기재한 경우, ‘연금개시 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기재한 경우, ‘연금개시 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기재한 경우 등이 있음

○ NH농협생명이 승소한 사례가 1건 있었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약관에서 연금월액이 적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었음

- 즉 약관상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 시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다만, 가입 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음
 - 법원은 이와 같은 약관문구가 가입설계서와 상품제안서(연금액 예시에 가입 후 5년 이내에 지급받는 연금월액이 5년 초과 후 지급받는 연금월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었음), 모집인의 설명(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연금월액이 매월 지급되나 다만 가입 후 5년 동안은 연금월액 중 일부가 원금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연금월액이 적다고 설명하였음) 등을 통해 명시·설명되었다고 인정하였음
- 또한 법원은 “무배당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유형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평균적인 고객이라면 보험회사의 초과이익(배당보험에서의 배당이익)이 아닌, 순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인 공시이율 적용이익의 일부가 원금 보장을 위한 연금계약적립금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도 덧붙였음⁵⁾

○ 그 외에는 1심에서 보험회사들이 패소하고 있었음

- 법원은 연금월액 계산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음

〈표 4〉 보험회사 패소 판결에서 법원의 판단 근거

-
- ☑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월액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명시·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
 -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복잡한 연금월액 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더라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을 명시함과 함께 연금월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해야 함
 - 상속종신형의 경우에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연금월액으로 지급되고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월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만 명시·설명하면 되나, 상속만기형의 경우에는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월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외에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만이 연금월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을 위해 적립된다는 점까지 명시·설명해야 함
 - ☑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에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명시·언급되어 있지 않음
 - 산출방법서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약관에 이를 계산의 근거로 명시해야 하나 그러한 언급이 없으므로 보험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 ☑ 가입설계서상 연금액 예시에 기재된 상속종신형과 상속만기형의 연금월액의 예시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정, 상속만기형의 경우에도 그 보험기간에 따라 예시금액이 변동되는 사정에서 곧바로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인지되고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기본 구조와 원리, 이러한 구조 및 원리를 전제로 한 연금계약적립액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해석, 이 사건 보험이 무배당 보험으로 보험회사의 별도 자산운용수익은 만기보험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데, 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일의적으로 해석·도출되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음
-

- 한편 최근에 보험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해당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3항에서 살펴봄

5) 이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관한 의미 있는 판시 내용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그 외에 보험회사들이 패소한 1심 판결에서는 평균적 고객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된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3. 최근 선고된 판결⁶⁾의 주요 내용

- 해당 사안의 보험약관에서는 연금월액에 관하여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금월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산출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됨
 - 가입설계서상으로는 상속연금형의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월액을 계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표 5〉 약관 및 가입설계서상 연금월액 관련 기재 내용

※ 약관상 해당 내용

(1) 생존연금

연금지급 형태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순수종신연금형	(생략)	(생략)
확정기간연금형	(생략)	(생략)
상속연금형(만기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 보장개시일부터 만1개월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까지 살아 있을 때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상속연금형(종신형)	(생략)	(생략)

- (주) 1.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9.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입설계서상 해당 내용

- 연금월액은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분할시점에 예시된 각각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단, 상속연금형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월액을 직접 계산합니다.

- 첫 번째 쟁점은,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는지 여부였음
 - 약관의 기재만으로는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알 수 없고, 산출방법서에 의해서 비로소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알 수 있으며, 약관상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직접적인 지시문구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 계산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는지가 문제됨
 -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해당 내용이 설명의무의 이행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해당 보험약관의 일 부라고 하거나 적어도 해당 보험약관은 당연히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약관에서 연금월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금계약적립액에 대해서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지시문구를 두고 있는 점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19가합500661판결

-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연금월액의 액수를 확정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 가입설계서에서 연금월액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 기존에 보험회사들이 패소한 사안에서는 법원이 약관상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명시적인 지시문구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이와 입장을 달리한 것임

○ 두 번째 쟁점은, 연금월액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즉 이러한 설명을 통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의 공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음

- 연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연금액에 관해 설명을 해야 함
 - 연금액의 계산방법은 복잡한 수학적 방식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고 대신 연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일정한 조건에 따른 대략적인 연금액과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며,⁷⁾ 이 부분은 기존에 보험회사들이 패소한 사안에서의 법원의 판단 내용과 동일함
 - 즉 연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연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과 최근 판결 사이에 이견이 없는데, 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된다'는 내용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과 최근 판결이 서로 달리 판단하였음
-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
 - 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가입설계서를 제시·교부하면서 연금액에 관해 설명하였음
 - 가입설계서상 순수종신형과 확정기간형 보험의 연금액이 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형 보험의 연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었고 상속종신형 보험의 연금액이 상속만기형 보험의 연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었음
 - 이 사건 보험계약자는 만기에 목돈을 돌려받는 유형의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했고 이에 모집인이 상속종신형과 상속만기형을 비교하면서 상속종신형이 상속만기형보다 연금액은 조금 더 많지만 상속종신형의 경우 사망 시 돌려받는 금액이 상속만기형의 만기 시 돌려받는 금액보다는 조금 적다고 설명함
 - 한편, 모집인이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거나 상속만기형의 연금액이 상속종신형보다 적은 이유가 만기 시에 연금계약적립금을 초과하여 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주기 위해 그 재원을 공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음
- 이러한 사실 인정을 토대로 법원은, 보험회사는 가입설계서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과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상속만기형에 가입할 경우와 상속종신형에 가입할 경우를 비교하여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음

7)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 기존에 보험회사들이 패소한 사안에서 법원이 상속만기형의 경우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된다’는 내용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는 달리 본 것임
- 기존 판결에서 법원은, 가입설계서상 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행 사이에 연금월액 예시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내용이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음
-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는 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행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액수는 적으나 만기 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속만기형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았다거나 상속만기형의 연금월액은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상속만기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보험을 선택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결국,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된다’는 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임

○ 여론으로서 법원은, 설사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만약 산출방법서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관 그 자체로는 연금월액을 확정할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 약관에 공백이 있는 경우이고, 그 경우에는 약관을 비롯하여 해당 보험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항을 종합한 보험계약의 해석을 통해 연금월액의 계산방법 내지 그 액수를 확정해야 한다고 봄
- 해당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행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액수는 적으나 만기 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속만기형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 결정의 판단자료로 교부받은 가입설계서에 표시된 예상 연금월액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여 산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보험의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함



4. 맺음말

○ 이처럼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에서 산출방법서상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내용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었는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라는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하여 1심 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⁸⁾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8) 아울러 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에 기재된 내용 및 모집인이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등 개별 사안에서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임